

(사)한 국 신 장 년 진 흥 회
(Korea Neosensor Promotion Association)

문서번호 : 한신진-2026-0602

시행일자 : 2026년 06월 17일

수 신 : 등기 이사 7인

(이현숙, 임병기, 송재혁, 김경옥, 김용수, 임광호, 강세호 이상 7인)

참 조 : 감사 2인 (이경식, 박선민)

제 목 : 2026년도 제2차 (서면)이사회 결과 보고

1. 이사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본 진흥회에서 2026년 6월10일~6월17일까지 '가치 있는 회원 배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인회원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재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존 월회비 제도 외에 '연회비 10만 원 제도' 실시를 위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 서면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서면회의 참석 이사 수: 제적이사수 7명 중 6명 참석(불참 1명)

나. 서면회의 참석 감사 수: 제적감사수 2명 중 1명 참석(불참 1명)

나. 서면회의 결과: 재적이사 7명중 과반수의 서면결의서 회수로 성원(개회)이 되고, 출석(제출)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서 운영규정 제4조(회비)와 부칙 제1조(시행일)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영규정 제4조 (회비)

① 개인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월정회비: 월 20,000원(회비납입신청서 제출에 의한 자동결제 등을 통해 납입)

2. 연정회비: 연 100,000원(캠페인 기간 회원가입신청서 제출과 연1회 법인통장에 일시납)

② 단체회원은 10명 기준 월 100,000원(회비납입신청서 제출에 의한 자동결제 등을 통해 납입).

※운영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서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6.6.17.) 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26.2.23.)

※연정회비 납입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별첨 1 서식

※ 첨부 서류 :

1. 연정회비 납입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부,
2. 2026년6월17일 개정된 운영규정 전문,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신장년진흥회 회장 강 세 호 (직인)



기안자 사무처장 허재만 정책위원 수석이사 이현숙, 회장 강세호

시행 한신진 제2026-00002호 (2026. 06. 17.)

우 135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2415호(정자아이파크)

전화 [031-718-5811] 전송 [031-723-5816] / 이메일 admin@neosenior.org

사단법인 한국신장년진흥회 회원 가입 신청서

(연정회비 개인회원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		스마트폰전화	
이메일 주소			
직장명			
직장주소			
전문보유기술			
상기 본인은 (사)한국신장년진흥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면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연정회비(10만원) 개인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가입일: 2026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사)한국신장년진흥회 귀중			

(사)한국신장년진흥회 운영규정

2026.2.23. 제정, 2026.6.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운영 규정은 (사)한국신장년진흥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43조(규칙 제정)에 의거하여, 본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운영 규정은 본회의 회원과 임직원, 위원회 위원 등에 적용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 가입)

- ① 본회 및 각 지부에 회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 홈페이지(neosenior.org)에 게시된 CMS 자동이체 신청서(입회원서 겸용)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회 신청은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 (회비)

- ① 개인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월정회비: 월 20,000원(회비납입신청서 제출에 의한 자동결제 등을 통해 납입)
 2. 연정회비: 연 100,000원(캠페인 기간 회원가입신청서 제출과 연1회 법인 통장에 일시납)
- ② 단체회원은 10명 기준 월 100,000원(회비납입신청서 제출에 의한 자동결제 등을 통해 납입)

제 5 조 (총회원수) 총회원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에 소속한 회원의 총 인원 수로 산정한다.

제 6 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정관 제19조와 제7조에 따라 중앙회 이사,

각 지부의 대의원, 단체회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임기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임시총회까지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선별적으로 지부의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도록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조직) 본회는 중앙회 산하 광역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본회의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사무처) 정관 제39조에 따라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며, 세부 규정은 추후에 정한다.

제 9 조 (임직원) 정관 제11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며, 상근 임직원의 추가 세부 규정은 추후에 정한다.

제 4 장 특별위원회

제1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정관 제3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각 전문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과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조직) 본회의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법률정책위원회
- 교육위원회
- 건강복지위원회
- 하이테크위원회
- 재무회계위원회
- 여가선용위원회
- 사회정화위원회

- 언론홍보위원회
- 회원배가위원회

제12조 (역할)

각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법률정책위원회: 본회의 주요 정책 제안 및 법률적 사안 검토
- 교육위원회: 본회 고유목적 사업 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안
- 건강복지위원회: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 발굴
- 하이테크위원회: 신장년 세대를 위한 하이테크 기반 일자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재무회계위원회: 본회 운영 자금의 조성 방안 및 투명한 관리 업무 자문
- 여가선용위원회: 신장년 세대의 일·여가 병행을 위한 기회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
- 사회정화위원회: 신장년 세대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사회정화 활동 및 캠페인 추진
- 언론홍보위원회: 본회의 고유목적사업 및 활동에 대한 대외 홍보 추진
- 회원배가위원회: 본회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 확충 및 배가 활동 추진

제13조 (운영)

- ① 각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임명 후 해당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본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예산을 지원받은 자문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또는 매년 말,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지부 운영

제14조 (지부장의 선출 및 임기)

- ① 지부장은 지부의 활성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부 총회(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지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지부 내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지부장의 역할)

지부장은 해당 지부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지부 소속 회원의 관리 및 회원 배가 운동 추진
- 지부 고유 사업의 발굴 및 시행
- 지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본회 이사회 및 총회 위임 사항 처리
-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6조 (지부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① 각 지부는 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사업 및 공익 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부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부 운영 재원 및 회비 배분)

- ① 지부의 운영 재원은 지부 자체 수익금과 후원금, 그리고 지부 소속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지부의 자립 경영과 회원 확충을 장려하기 위하여, CMS 회비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 **배분 대상:** 2026년 3월 이후 지부를 통해 신규 가입한 개인회원이 납부한 회비 (즉, 단체회원,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회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 **배분 절차:** 위 배분 대상의 50%를 해당 지부에 배정할 수 있다. 지부장은 사용계획서를 사무처에 제출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후 보고 해야 한다.
 - **사용처:** 회원 확충과 수익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만 배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지급 시기:** 본회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CMS 입금 내역을 정산하며, 사전 승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익월 10일까지 각 지부의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19조 (회원 배가 운동)

각 지부장은 지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직 확대를 위하여 연간 회원 배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서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6.6.17.) 부터 시행한다. (제정일 2026.2.23.)